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소영철 의원

안녕하십니까? 소영철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·동료의원들 앞에서 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사업자가 재정지원금 적정사용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되 ‘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시’에는 시장이 회계감사 시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에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,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